■ 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89-228.
http://doi.org/10.17948/kcs.2025..108.189

북한군의 표창제도 형성 연구

김선호(金宣浩)*

목 차

1. 머리말
2. 6・25전쟁 이전 북한군 표창제도의 수립과정
3. 6・25전쟁기 북한군 표창제도의 확대
4. 맺음말

국문초록

북한은 1947년 4월에 '표창장'을 제정한 이래 6・25전쟁 때까지 북한군에 표창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1948년 10월 12일에는 처음으로 국기훈장이 제정되었고 1949년 6월 13일에는 군공메달이 도입되었다.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6・25전쟁 초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30일 영웅칭호를 새로 제정했고 7월 1-13일에 전사의 영예훈장, 자유독립훈장, 리순신훈장을 새로 도입했다. 전쟁 전에 도입한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의 수훈자도 개전 직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은 6・25전쟁 동안 북한인 718,712명과 중국군 450,686명 등 총 1,169,39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가장 많이 수여된 표창은 전체 수훈자의 81.7%가 받은 군공메달이었고 그 다음은 10.9%가 받은 전사의 영예훈장이었다. 국기훈장 수훈자도 6.6%에 달했으며 영웅칭호는 491명에게 수여되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점령의 승패를 좌우하던 1950-1951년에 2중 영웅을 다수 배출했고 6회에 걸쳐 표창권한을 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했다.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소련・중국처럼 표창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으로 국가 건설과 전쟁 승리를 추구했다. 북한군의 표창은 군인들의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향·가족·본인에게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군대와 사회를 긴밀히 결속시켰다. 따라서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영웅 등 군사적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국가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6·25전쟁 전후에 군사적 요소가 북한사회에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주제어: 인민군, 공화국 영웅칭호, 국기훈장, 근위부대, 자유독립훈장, 최고인민회의, 한국전쟁

1. 머리말

6·25전쟁 시기까지 북한군이 군인이나 부대에 수여하는 표창으로는 영웅칭호, 국기훈장(國旗勳章), 근위칭호(近衛稱號), 자유독립훈장, 전사의 영예훈장, 리순신훈장, 군공메달 등이 있었다. 영웅칭호는 가장 우수한 투사·일꾼에게 국가가 표창하는 최고 명예 칭호이고, 국기훈장은 각 부문에서 탁월한 공훈을 세운 공민·집단·기관·기업소·사회단체에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훈장이다. 근위칭호는 전투의 공로를 표창해 연대 이상의 부대에 수여하는 칭호이며, 자유독립훈장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능숙한 지휘로 자기 부대의 전과를 보장한 인민군[1] 지휘관과 유격대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전공을 세운 인민군 군인과 유격대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고, 군공메달은 조국보위사업에 공로가 있는 인민군대, 경비대 등의 군인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의 일종이다.[2] 일반적으로 훈장과 메달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큰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집단에 국가에서 주는 표창이다.[3]

북한군이 군인이나 부대에 표창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1948년 9월 9일 북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표창이 수여된 것은

1) 북한군은 민족보위성이 관할하는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과 내무성이 관할하는 내무군(內務軍)으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 조선인민군과 내무군의 간부와 편제는 다음 책을 참고했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한양대출판부, 2020.

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29면, 34면, 39면, 200면, 248면, 255면.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훈장·메달」, 『조선대백과사전』, 삼일포정보쎈터, 2001.

1948년 10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국기훈장 제1・제2・제3급’을 제정한 이후였다.[4] 북한군의 표창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다음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30일에 표창제도 중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했다.[5] 7월 1일에는 “전사의 영예훈장”을 제정했고,[6] 7월 7일에는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을 제정했다.[7] 뒤이어 7월 13일에는 “리순신훈장 제1급・제2급”을 제정했다.[8]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훈을 세운 ‘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를 표창하기 위해 7월 19일 근위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9]

국가수립 전후와 6・25전쟁 시기에 형성된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10] 이처럼 북한군의 표창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주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북한군의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와 영웅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근위부대 칭호의 의미, 영웅칭호의 종류와 도입과정이 일부 밝혀졌다.[11] 그러나 국가건설기와 6・25전쟁 시기에 북한군의 표창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표창은 근대국가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보편적인 원리 중 하나였다. 규율과 규정 등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표창을 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하 정령): 국기훈장 제1・제2・제3급의 제정에 관하여」, 『로동신문』, 1948.10.13.
5) 「정령: 최고의 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0.6.30), 전선사령부, 『문헌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a), 31면(NARA, RG 242, SA 2008, Box 8, Item 43. 이하 SA자료는 SA 2008-8-43 등으로 줄임).
6) 「정령: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1950.7.1), 전선사령부, 앞의 책(a), 34면.
7) 「정령: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7.7), 전선사령부, 앞의 책(a), 39면.
8) 「정령: 리순신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7.13), 전선사령부, 앞의 책(a), 43면.
9) 「정령: 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에게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7.19), 제825군부대 정치부, 『근위칭호에 관한 재료집』, 제825군부대, 1950, 3면.
10) 「김정은 위원장,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및 직속 제1땅크장갑보병련대 시찰」, 『통일뉴스』, 2024.3.25; 「김정은, 수해 구조 나선 직승비행부대에 ‘자유독립훈장’ 1급 수여」, 『뉴스1』, 2024.8.3.
11) 째르치즈스키 표도르, 『조선인민군의 조직적 특성과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92-131면; 송현진, 『북한의 영웅정치 연구』,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38-89면.

용해 군인들의 전의(戰意)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었다. 영웅칭호 등 표창제도를 처음 도입한 소련은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영웅을 등장시키고 이를 대중운동을 통해 전체 인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려고 했다. 중국은 영웅칭호 등을 통해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동원함으로써 대중운동 방식으로 공산당이 봉착한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12]

사회주의국가는 표창을 활용해 인민을 대중적으로 동원해서 국가 건설과 위기 돌파를 추구했는데, 북한 또한 이 같은 표창제도를 도입해서 군인들이 국가 건설과 전쟁 수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 글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군의 전체적인 표창제도가 만들어진 과정, 형성 당시 표창제도의 종류와 의미, 표창제도의 적용과정을 자료에 입각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군에 형성된 표창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6·25전쟁 이전 북한군 표창제도의 수립과정

1) 정부수립 전후 표창제도의 도입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정부수립 이전부터 군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적인 군인을 양성하고자 했다. 북한이 군인들에게 표창을 주기 시작한 시기는 1947년인데 현재까지 1947년도 표창 수여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최초의 표창제도는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시기에 제정되었다.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47년 4월에 '국가적인 표창장'을 새로 만들고 국가건설을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한 모범적인 인물들을 표창했다.[13]

정부수립 이전에 군인들에게 수여된 표창은 군인들이 작성한 「리력서」와 「자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창이 수여된 가장 빠른 시기는 1947년

12) 송현진, 앞의 논문, 30-31면.
13) 김일성, 「공화국의 훈장을 제정할데 대하여」(1948.10.4), 『김일성전집』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40-341면.

10월이다. 제1보병사단 제3연대 3대대 중기중대 전사 정영삼은 1947년 10월에 공작과 학습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제3연대장 최춘국으로부터 “물품표창”을 받았고,[14] 제2보병사단 포병연대 제1대대 2중대 포장 리동춘은 1947년 12월 31일 부대 총결회의 때 모든 학습에서 우수하다는 이유로 “연대장 감사 1차”를 받았다.[15] 제1포병연대 소대장 리관호의 경우 1947년 10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우등사격수 훈장”을 받았고, 1948년 2월 8일에는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에 자기 책임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16]

군인들은 정부수립 이전에 정권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로부터 훈장과 표창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창장은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에서도 수여했다. 군사지휘기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 협주단장 정률성은 1948년 2월 8일 “1947년도 인민경제부흥발전의 승리적 완수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어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그러나 1947년 2월 20일에 설립된 북조선인민회의와 2월 22일에 설립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규정에는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17] 따라서 정부수립 이전에 북한군에 대한 정권기관과 입법기관의 표창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부흥발전계획’ 등 특정한 사업에 성과를 달성했을 때 수여된 것이다.

정부수립 이전에 수여된 표창은 북한군에서 수여한 연대장감사 등 명령감사, 물품표창,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수여한 우등사격수 훈장과 표창장 등이다. 명령감사는 부대장이 공식적인 명령서를 통해 군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창의 이유는 공작・학습・사격・임무수행의 우수함과 경제발전의 기여도였다. 이 표창은 군인들의 「리력서」에 기록되어 인

14) 정영삼, 「자서전」(1950.3.9), 제17포병련대, 『민족보위성 리력서(정영삼)』, 민족보위성, 1950.1.25.
15) 리동춘, 「자서전」(1950.2.21), 포병지휘국 포병간부과, 『민족보위성 리력서(리동춘)』, 민족보위성, 1949.7.27.
16) 제17포병련대, 『민족보위성 리력서(리관호)』, 민족보위성, 1950.1.18.
17)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5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 144-148면.

사이동과 진급 때마다 활용되었다.

정부수립 이전까지 북한군의 표창은 그 종류가 적었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부터 표창의 종류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에 표창과 관련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 중 하나는 "훈장 또는 명예칭호의 수여"였다.[18]

북한군 표창의 종류와 내용은 민족보위성 총참모부에서 1949년에 생산한 『기율규정(紀律規程)』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북한군은 "근무상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와 훈공을 세운 자 및 열성분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는데 표창의 종류는 〈표 1〉과 같다.[19]

〈표 1〉 북한군의 표창 종류(1949년)

직무	표창 종류	표창 권한
전사 · 하사관	명령서로서 혹은 대열 앞에서 감사 선포	분대장(포장) · 부소대장 · 소대장, 중대 · 대대의 특무장 이상
	이전에 받은 규율징벌의 취소	분대장(포장) · 부소대장 · 소대장, 중대 · 대대의 특무장 이상
	2일까지 외출허가 혹은 함선에서 상륙허가	중대장(4급함장 · 비행중대장), 대대장(3급함장 · 비행대대장) 이상
	왕복일수를 제외한 10일까지의 휴가	연대장(1급함장 · 2급함장 · 독립비행대대장) 이상
	금전 또는 귀중품 수여	연대장(1급함장 · 2급함장 · 독립비행대대장) 이상
	펼친 군기 앞에서 찍은 개인사진 수여	연대장(1급함장 · 2급함장 · 독립비행대대장) 이상
	고향 또는 전 직장에 수상자의 모범적 행위와 받은 표창의 통지	연대장(1급함장 · 2급함장 · 독립비행대대장) 이상
	교도부대에서 전 과정을 수료하거나 후비역에 편입할 때 상장 수여	여단장 · 사단장(해군학교교장 · 비행사단장), 집단군사령관 · 군단사령관 이상
	기념장의 수여	군관구사령관 · 전선사령관(함대사령관)
	군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군관구사령관 · 전선사령관(함대사령관)

18)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0년)』, 조선중앙통신사, 1950(a), 6면.
19)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紀律規程』,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 21-24면(SA 2009-5-20).

직무	표창 종류	표창 권한
	학생의 성명을 명예게시판에 기록	
군관·장관	군관회의 석상에서 구두 혹은 명령서로서 감사 선포	중대장(4급함장·비행중대장), 대대장(3급함장·비행대대장) 이상
	이전에 준 규율징벌의 취소	중대장(4급함장·비행중대장), 대대장(3급함장·비행대대장) 이상
	금전 또는 이름을 세긴 귀중품의 수여	연대장(2급함장·독립비행대대장), 사단장(1급함장·비행사단장), 집단군사령관·군단사령관 이상
	정기 군인관등급의 기한 전 진급	연대장(2급함장·독립비행대대장), 사단장(1급함장·비행사단장), 집단군사령관·군단사령관(분함대사령관) 이상
	근위부대로의 전임(轉任)	군관구사령관·전선사령관(함대사령관) 이상
	이름을 새건 도검류(刀劍類) 및 사격무기의 수여	민족보위상, 민족보위성 부상, 인민군 총참모장, 육군·해군·공군총사령관, 후방장관
	육군대학(군관학교·강습소)에서 우등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의 성명을 명예게시판에 게시	민족보위상, 육군대학(군관학교·강습소) 교장(강습소장)

북한군의 표창은 직무에 따라 전사·하사관과 군관·장관으로 각각 구분되어 다르게 수여되었다. 전사·하사관은 군관·장관과 달리 특별외출·휴가나 군기 앞에서 찍은 개인사진을 주고 고향이나 전 직장에 수상자의 모범행위와 표창결과를 통지했다. 군관·장관은 전사·하사관과 달리 특별진급이나 근위부대로 전임시키고 본인의 이름을 새긴 도검류나 사격무기를 수여했다. 전사·하사관의 경우 고향·직장에서 명예를 높이는 혜택을 준 반면 군관·장관은 군대 안에서 명예를 높이는 혜택이 주어졌다.

각 표창은 이를 수여할 수 있는 지휘관이 달랐는데 대부분의 표창은 사단장 이하 지휘관이 줄 수 있었던 반면 기념장·도검류·사격무기 수여, 근위부대 전임, 명예게시판 게시 등은 군관구사령관·전선사령관 이상 지휘관에게만 표창권한이 부여되었다. 최고지휘관인 민족보위상은 『기율규정』에 기술된 모든 범위의 표창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수여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별도의 보고체계와 기록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표창을 받은 전사·하사관(해군하사관)은 반드시 중대장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군관은 부대장·함장에게 보고하며 부대장(함장)·장관(해군장관)은 상급연합부대의 참모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표창 결과는 반드시 부대에서 관리하는 『상벌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 전사와 하사관의 표창은 중대에 등록하고 군관의 표창은 부대 참모부에 등록하며 부대장(함장)·장관(해군장관)의 표창은 상급연합부대 참모부에 등록했다. 또한 대대장·연대장·함장은 표창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벌등록부』를 검열할 의무가 있었다. 이 『상벌등록부』는 군인들이 전임·전직할 때 반드시 새로운 근무지에 송부되었다. 또한 표창을 받은 군인이 군사상 범죄를 저질러 구류당할 경우에는 표창에 대한 조치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구류당한 군인의 훈장과 메달은 즉시 압수되어 부대 참모부나 위술지역 경부사령부에 보내져 보관되었다.[20]

한편 1948년 9월 9일 북한정부가 수립되고 군사지휘기관으로 민족보위성이 창설되면서 군관들의 공식적인 「리력서」에도 “정부의 표창”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항목에 기술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북한정부·외국정부의 훈장·훈패였고, 다른 하나는 군사령관이 선포한 기타 표창·감사였다.[21] 군관과 달리 전사·하사관의 「리력서」에는 표창은 기록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벌받은 징벌내용만 기록되었다.[22] 이는 민족보위성이 전사·하사관보다 부대의 지휘관·참모인 군관들의 상벌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부대배치·전임 등 인사조치에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군관들의 『상벌등록부』 중 「군관표창등록표」에는 표창시기, 표창내용, 표창명, 표창자가 기록되었다. 1949년에 작성된 민족보위성 군관 3명의 『리력서』에 기록된 표창내용을 종합해 보면 표창 종류는 대부분 부대원 앞에서 감사를 받는 대열감사와 명령서로 감사를 받는 명령감사였다. 표창을 수여한

20)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앞의 책, 26-27면, 41-42면.
21) 민족보위성 간부부 후방간부과, 『민족보위성 리력서(장세흥)』, 민족보위성, 1949.7.27.
22) 제582군부대, 『하사관·병사 리력서』, 제582군부대, 1949.8, 1-182면.

사람은 소대장 이상부터 연대장 이하의 지휘관이었다. 표창을 준 이유는 본인의 학습・훈련・내무생활이 우수하거나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서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였다. 제17포병연대 연대장 강병찬은 1948년 1월 24일에 '엄중경고' 징벌을 받았는데 이후 군정학습・내무생활・본인임무에서 성과를 보여 1948년 5월 1일에 징벌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그는 1949년 8월 14일에 '조국보위에 우수하게 노력했다'는 이유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군공메달을 받았다.[23]

군공메달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949년 6월 13일 처음으로 제정한 표창이다. 이 메달은 '공화국 적과의 전투, 국경의 보호, 파괴자・간첩분자・원수와의 투쟁'에서 큰 공로가 있는 '조선인민군대・국경경비대의 전사・군관・장관들'에게 수여되었다. 군공메달의 수여와 박탈은 오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할 수 있었다. 군공메달 수훈자에게는 전차에 무임승차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반면에 수훈자들은 '공화국 원수들과의 투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고 국가임무의 이행에서 공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24] 이 메달은 정부수립 이후 국가보위임무와 국경보호임무를 담당하는 인민군・국경경비대 군인들의 임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2) 국기훈장의 제정과 수여

군공메달과 함께 북한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대표적인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국기훈장이다. 국기훈장은 1948년 10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훈장은 제1급・제2급・제3급으로 구분되었는데 최고훈장은 국기훈장 제1급이었다. 국기훈장의 수여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특별한 공훈 있는 공민・집단・기관・기업소・사회단체"였다.

국기훈장은 오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수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었

23) 제17포병연대, 『민족보위성 리력서(김세찬・신영일・강병찬)』, 민족보위성, 1949.9, 42면, 74면, 406-407면.
24) 「정령: 군공메달 제정에 관하여」, 『로동신문』, 1949.6.15.

고 수훈자들에게는 무임승차와 연봉・연금 수령의 특전이 주어졌다. 반대로 수훈자들은 공민의 의무를 이행할 때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와 민족경제・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참가하고 민주건설을 촉진할 의무가 있었다. 수훈자가 사망한 뒤에는 모든 훈장과 훈장문건을 가족에게 넘겨주었다.[25] 각 급수별 수여대상자와 특전은 다음과 같다.[26]

〈표 2〉 국기훈장 수여대상자

급수	수여대상자	특전
1급	·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조직자와 지도자로 민족해방운동 조직사업에 있어서 특출한 공훈과 아울러 일본침략자와 외국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위훈과 영웅성을 발휘한 이에 대하여 · 민족경제와 민족 보위에 있어서 량적 질적으로 특출한 성과를 올린 활동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 정치적 활동을 촉진시킨 국가적 및 사회적 활동부문에 있어서의 특출한 공훈에 대하여 · 국가적 의의를 가진 특출한 과학연구사업에 대하여	· 철도・수상운수・전차・국영자동차 운수에 있어서의 무임승차 · 연봉 1,200원을 받음 · 수훈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음
2급	·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투사로 일본침략자와 외국제국주의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영웅적 행동과 헌신적 충성을 발휘한 이에 대하여 · 산업・농촌경리・운수・교육・민족문화 부문에 있어서의 특별한 공훈에 대하여 · 과학 연구 또는 문화 활동의 특출한 성과에 대하여 · 산업・농촌경리・운수부문에 있어서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기술적 개선과 특출한 발명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활동부문에 있어서의 특별한	· 기차・전차의 무임승차 · 연봉 900원을 받음 · 수훈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음

25) 「정령: 국기훈장 제1・제2・제3급의 제정에 관하여」, 『로동신문』, 1948.10.13.
26) 연봉은 수훈자가 받는 급여를 포함한 총액이며 수훈자는 남녀 각각 54세와 49세까지 연봉을 받다가 각각 55세와 5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 북한은 휴전 이후 현재까지 국기훈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혜택의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령: 국기훈장 제1・제2・제3급의 제정에 관하여」, 『로동신문』, 1948.10.13.

급수	수여대상자	특전
	공훈에 대하여	
3급	· 인민경제계획의 현저한 초과 완수와 생산품의 원가 저하와 원료 자재의 절약을 촉진한 산업·농촌경리·운수 또는 상업에 있어서의 높은 생산지수에 대하여 · 과학기술·문화 및 예술부문에서의 중요한 성과에 대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정치적 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활동부문에 있어서의 특별한 공훈에 대하여	· 전차의 무임승차 · 연봉 600원을 받음 · 수훈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음

국기훈장의 수여대상자는 해방 이후 국가건설에 기여한 공훈자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활동가까지 망라되어 있었다. 일제시기 활동가는 민족해방운동의 조직자·지도자와 반일·반제투쟁의 위훈자들이었고, 해방 이후 공훈자는 정치·경제·군사·산업·농촌경리·운수·교육·문화·과학기술·예술 부문의 공훈자들이었다. 북한은 국기훈장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성을 수립하는 한편 각 부문마다 공훈자를 선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국가건설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했다.

1948년 10월 12일에 제정된 국기훈장은 12월 21일에 처음으로 수여되었다. 이날 수여된 국기훈장의 수여대상은 "민족보위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함에 공훈있는 인민군대 및 내무성 군관들과 조선민주자주독립국가 건립을 위하여 외국침략 및 국내반동파들과의 투쟁에서 영웅성을 발휘한 투사들"이었다. 전체 수훈자는 34명으로 제1급 수훈자는 2명이고 제2급 수훈자는 12명이며 제3급 수훈자는 20명이었다.[27] 가장 먼저 국기훈장을 받은 인물들은 군사부문에서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49년 2월 7일에 다시 한번 국기훈장 제2·3급을 수여했다. 대상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보위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함에 공훈 있는 인민군대 및 내무성 군관들"이었다. 제2급 수훈자

27) 류문화,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증보판), 민주조선사, 1949, 214-215면.

는 6명이고 제3급 수훈자는 42명이었다.[28] 두 번에 걸쳐 국기훈장이 수여되는 사이인 1948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는 소련군의 공식 철수를 앞두고 "특별한 공훈을 발휘한 쏘련군대 원수·장관·장교들"에게 국기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15명에게 국기훈장을 수여했는데 22명에게 제1급을, 49명에게 제2급을, 44명에게 제3급을 각각 수여했다.[29] 1948년 12월부터 1949년 2월까지 국기훈장 제1·2·3급을 받은 수훈자는 총 197명이었다.

1948년 12월 21일에 처음 수여된 국기훈장의 수훈자는 인민군·내무성 군관과 외국·남한에서 반제국주의·반정부활동을 전개하는 인물이었다. 수훈자 34명 중에 내무성 군관은 박일우, 최현, 김광빈, 김한중, 백락칠, 한병혁, 김파 등 7명이었다. 외국·남한에서 반제국주의·반정부활동을 펼친 인물은 김달삼, 박달, 김지회, 리덕구, 조복례 등 4명이었다. 수훈자 34명 중 인민군 군관은 23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기훈장의 최고 영예인 제1급 수훈자는 다름 아닌 인민군과 내무군의 최고지휘관인 민족보위상 최용건과 내무상 박일우였다. 제2급 수훈자 12명 중 다수는 민족보위성·내무성의 중앙간부, 인민군·내무군의 지휘관이었다. 일제시기 동북항일연군 산하 갑산공작위원회 책임자 박달은 유일하게 일제시기 활동경력으로 제2급을 받았고 제주도유격대 지휘관 김달삼도 남한 출신 중에 유일하게 제2급을 받았다. 김달삼 외에 여순사건 지휘관 김지회, 제주도유격대 지휘관 리덕구, 남조선여맹 간부 조복례 등은 남한에서 반정부활동을 펼친 경력을 인정받아 제3급을 받았다.[30]

결국 1948년 12월 21일에 수여된 국기훈장은 국가건설기에 북한군을 창설하고 육성하는데 공훈을 세운 사람들과 1948년 9월 9일 북한정부 수립 전후에 외국과 남한에서 해방과 북한의 정치세력을 위해 싸운 공훈자들에게 수여된 것이다. 이에 비해 1949년 2월 7일자 국기훈장은 외국·남한 활동

28) 류문화, 같은 책, 214-215면, 232-233면.
29)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9, 774-778면, 781면, 790-791면.
30) 국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1989), 774-778면, 781면, 790-791면.

가를 제외하고 인민군・내무성 군관만을 대상으로 수여되었다. 제2급・제3급 수훈자는 1948년 12월 21일에 국기훈장 수훈자에서 제외되었던 인민군・내무성 군관들로 채워졌다. 수훈자의 구성은 1948년 12월 21일에 비하면 인민군의 경우 육군 중심에서 공군・해군으로 확장되었고 사단장(여단장)・참모장에서 부사단장・연대장으로 넓혀졌다. 내무군의 경우 38경비여단에서 국경경비여단・중앙경위연대로 확장되었다.

전쟁 전에 군관들만 국기훈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전사 변익두는 1949년 6월 1-3일에 "38선 접경 태탄전투에서 8명을 사살한" 전공으로 국기훈장 제3급을 받았으며, 분대장 윤장선은 1949년에 38선 이북지역을 정찰하는 남한 비행기를 발견하고 소총사격을 가해 38선 이남지역으로 퇴각시킨 공로로 군공메달을 받았다.[31] 1949년 3월 이후 국기훈장 수훈자들은 모두 38선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인물들이고 같은 날 집단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날짜에 개인별로 국기훈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과 전사・하사관・군관에 대한 국기훈장은 6・25전쟁 개전 이후에 본격화된 표창 방식이지만 이미 1949년에 38선전투 공훈자들에게 수여되었다.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전에는 각 부대장이 '감사'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과 정령에 따라 운영되었다. 북한정부는 표창의 수여권한을 일선 부대에서 주권기관으로 상향시킴으로서 표창의 권위와 수훈자들의 명예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기훈장 제정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정통성을 수립하는 한편 각 부문마다 공훈자를 선정함으로써 소련이나 중국처럼 주민들이 국가건설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중적으로 독려했다.

31)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二주년에 제하여』, 문화선전성, 1950, 4-7면(SA 2009-1-148).

3. 6·25전쟁기 북한군 표창제도의 확대

1) 영웅칭호의 제정과 수여

북한군의 표창제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다음이다. 전투에 투입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들이 전투에서 적극적으로 전과를 발휘하게끔 만들려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북한은 개전 이후부터 다양한 표창제도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개전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표창제도는 '영웅칭호'이다. 영웅칭호는 인민의 가장 우수한 투사·일꾼에게 국가가 표창하는 최고 명예 칭호로 "공화국 영웅칭호"와 "공화국 로력영웅칭호"가 있다.[32] 북한에서 영웅칭호가 처음으로 제정된 시점은 개전 이후 5일이 지난 1950년 6월 30일이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통해 영웅칭호를 제정함과 동시에 영웅칭호를 받는 자에게 최고훈장인 국기훈장 제1급, 금별메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함께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이날 영웅칭호를 제정한 이유는 이틀 전인 6월 28일 북한군이 전쟁의 1차 목표인 서울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기 때문이었다.

「영웅칭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웅칭호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웅적 위훈을 세운 자"에게 주며, 영웅칭호를 수여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뿐이었다. 이미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 다시 영웅칭호를 받는 경우에는 두 번째 금별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와 함께 그의 고향에 공훈사적을 새긴 동상을 건립하도록 했다. 영웅칭호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수여했다. 이것이 이른바 '2중 영웅'이다. 또한 영웅칭호 수훈자에게는 금전적 혜택과 특전이 주어졌는데 「국기훈장 제1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금을 규정액의 2배로 받게 되었고, 「국기훈장 제1·2·3급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모든 특전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33]

---

3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앞의 책, 200면.

33) 「정령: 최고의 영예인 조선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1950.6.30), 전선사령부,

6·25전쟁 때 처음 도입된 북한의 영웅칭호는 소련의 영웅칭호를 변용한 것이다. 소련은 영웅적 위업을 발휘한 인물에게 영웅칭호를 수여하고 이와 동시에 레닌훈장, 금별 훈패, 소련최고소비에트 상무위원회의 상장을 수여했다. 두 번 영웅적 위업을 발휘한 소련영웅에게는 소련최고소비에트 상무위원회의 특별상장과 두 번째 금별 훈패가 수여되었고 영웅의 고향에 동상이 세워졌다. 3중 영웅은 특별상장과 세 번째 금별 훈패가 주어졌고 그의 동상이 모스크바 연맹회관 누각에 진열되었다. 대표적인 3중 영웅은 소련군 최고사령관 대리 주코프(Georgy K. Zhukov) 원수이다.[34] 북한은 소련의 영웅칭호를 도입했지만 소련에 있던 3중 영웅칭호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세계대전 차원에서 전개된 독소전쟁에 비해 전쟁의 규모와 양상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1950년 6월 30일에 영웅칭호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영웅칭호가 수여된 날은 1950년 7월 15일이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여 영웅적 위훈을 세운' 인민군 군관·하사관 12명에게 처음으로 영웅칭호를 수여했다. 수훈자는 김군옥, 김기옥, 김두섭, 김봉호, 김일섭, 김진걸, 김홍엽, 리문순, 리완근, 리훈, 전기련, 정학봉이었다.[35]

12명의 영웅 중 해군 원산기지 제2정대장 김군옥은 7월 4일 주문진해전, 리훈 연대장과 김봉호 정찰중대장은 6월 27-28일 서울점령전투와 7월 2일 한강도하전투, 비행사단 추격기연대 제2대대 3중대장 김기옥과 제1대대 2중대장 리문순은 7월 12일 조치원 상공과 김포비행장의 공중전, 제105탱크사단 214호 탱크 운전수 전기련은 6월 26일 포천점령전투 등에 참전했다.[36] 최초로 영웅칭호를 받은 군인들은 모두 개전 초기 전투에서 다른 부대·군인에 비해 탁월한 전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 쉽게 알 수 있듯 이들의 전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은 이들을 모범으로 내세워 다른 군인들의 전투의지

앞의 책(a), 31-33면.

34) 「쏘련英雄의 稱號」, 『朝鮮新聞』, 1946.10.3.

35) 「정령: 인민군 군관·하사관들에게 조선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7.15), 전선사령부, 『문헌집』제3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b), 40면(SA 2009-1-113).

36) 조선인민군, 『전투영웅실기』, 조선인민군, 1950, 1-14면(SA 2007-10-55).

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7월 15일을 시작으로 휴전 이후 3일 뒤인 1953년 7월 30일까지 6·25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민족보위성·내무성 예하 전사·하사관·군관·장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웅칭호를 수여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 동안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은 총 491명이었다. 이 중에는 중국군 10명이 포함되어 있었고,[37] 철도성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기술자·기관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공이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에 공헌한 민간인들에게도 영웅칭호가 수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1년 2월 20일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만나서 지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영웅칭호를 통해 추구했던 선전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총정치국장에게 전투영웅을 소개·선전하는 글을 출판물에 많이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출판물에 소련의 전투실화와 영웅을 소개하는 글이 많은 반면에 인민군의 영웅적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 적다고 지적하고 용감성·희생성을 발휘한 군인과 전투영웅을 적극적으로 소개·선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화국 전투영웅에 대한 글을 쓸 때 그들을 특출한 인물로 묘사하지 말고 생활형편, 성장과정, 입대 동기, 전투과정을 사실대로 서술함으로써 그들이 주민들 속에서 나온 평범한 노동자·농민의 자녀임을 강조하라고 지시했다.[38] 즉 북한은 공화국 영웅들이 평범한 사람들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군인들도 이들처럼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선전한 것이다.

또한 전쟁 중에 영웅칭호를 두 번 받은 2중 영웅도 배출되었다. 『로동신문』에 보도된 2중 영웅은 방호산 제6사단장(이후 제5군단장), 김기우 하사관, 리학문 정찰지휘관, 백사순 중기중대장 등 4명이다. 북한군 최초의 2중 영웅은 제6사단장 방호산이다. 그는 1950년 7-8월 대전전투와 호남지역 점령전투로 1950년 9월 2일 영웅칭호를 받았고 1950년 10-11월 후퇴작전 시

37)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4-1955년)』, 조선중앙통신사, 1955(c), 473-474면.
38) 김일성, 「전투영웅들을 광범히 소개 선전할데 대하여」(1951.2.20), 『김일성전집』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60-161면.

보인 탁월한 지휘력을 평가받아 11월 15일에 다시 영웅칭호를 받았다.[39] 두 번째로 2중 영웅이 된 비행기사냥꾼조 김기우 하사관은 1951년 2월 22일 최초로 유엔기를 격추한 전공으로 1951년 3월 28일 영웅칭호를 받았으며 그가 소속된 비행기사냥꾼조 조원 29명도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40] 그는 3월 28일 영웅칭호를 받은 후 한 달도 안된 4월 12일에 다시 영웅칭호를 받았다.[41] 이처럼 한 달 안에 연이어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한데 이는 개인의 전공뿐만 아니라 소속부대의 전공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김기우의 고향인 단천군의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951년 5월 21일 '김기우 2중 영웅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동상건립에 착수했다.[42]

세 번째 2중 영웅 리학문 하사관은 1951년 1-2월 유엔군의 공세에 따른 후퇴작전 중 화천·김화·이천전투에서 공훈을 세워 1951년 2월 14일에 영웅칭호를 받았고, 1951년 2월 4차 공세 시에는 유엔군 후방에서 척후활동을 펼친 공로로 1951년 8월 8일에 다시 영웅칭호를 받았다.[43] 네 번째 2중 영웅 백사순 중기중대장은 1950년 서울·수원·문경전투에서 중기중대로 국군과 미군을 섬멸한 공로와 9월 이후 후퇴과정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한 공로로 1951년 5월 9일 영웅칭호를 받았고, 1951년 6월에 902.4고지를 방어한 공로로 1952년 1월 28일에 다시 영웅칭호를 받았다.[44]

4명의 2중 영웅 중에 1950년 11월에 2중 영웅이 된 방호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1951년에 2중 영웅이 되었다. 이에 비해 1952-1953년에 2중 영웅이 된 인물은 없었다. 이는 1952-1953년의 전투가 38선을 둘러싼 고지전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점령을 추구하던 1950-1951년에 2중 영웅을 배출함으로써 모범적 군인상

39) 『로동신문』, 1950.9.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1-1952년)』, 조선중앙통신사, 1952(b), 442면.
40) 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우리 농민들이 낳은 공화국 영웅들』, 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 1952, 5-9면.
41) 「적기10대 요격하여 3대격추(영웅 김기우 동무)」, 『로동신문』, 1951.4.11.
42) 「2중영웅 김기우 동무의 동상을 고향 단천에 건립」, 『로동신문』, 1951.6.10.
43) 「2중영웅 리학문동무 정찰지휘에서 빛나는 위훈」, 『로동신문』, 1951.9.16.
44) 「공화국 2중영웅 백사순 중기 중대장」, 『로동신문』, 1952.1.30.

을 군인들에게 심어주고 이들의 군인들의 전투의지를 진작시키려고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2) 근위칭호·부대칭호의 제정과 수여

영웅칭호와 함께 북한은 개전 이후 군부대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부대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표창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이 '근위칭호'이다. 근위칭호는 전투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연대 이상의 부대에 수여되며 근위부대는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나 연합부대를 뜻한다.[45] 반면에 근위부대의 군관·장관·해군장관이 기율징벌에 따라 직무감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근위부대 칭호를 박탈당하고 근위부대에서 전출되었다.[46]

북한군은 근위칭호 도입에 앞서 전공을 세운 부대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부대이름 앞에 '지역명'을 부여하는 표창방식을 먼저 도입했다. 이 부대칭호가 최초로 수여된 시기는 1950년 7월 5일이다. 이날 김일성은 최고사령관 명령 제7호로 「부대칭호 수여에 관하여」를 발표했다. 그는 서울시에 가장 먼저 돌입한 제3보병사단·제4보병사단(제18연대 포함)·제105탱크여단의 공훈을 격려하면서 이 부대에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4보병사단, 서울 제18보병련대"라는 부대칭호를 수여했다. 제105땅크여단은 사단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서울 제105땅크사단"이라는 부대칭호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제3사단·제4사단·제105땅크사단의 지휘관들에게는 서울점령전투에서 군공을 세운 예하 군관·하사관·전사 중에서 국가 최고표창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라고 명령했다. 김일성은 명령 제7호를 북한군 전체 군인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들의 모범을 따라 군공을 세울 것을 독려했다.[47] 6월 30일 영웅칭호 제정을 통해 개인의 전공을 독려했다면 7월 5일 부대칭호 제정을 통해 부대의 전공을 독려한 것이다.

---

45)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앞의 책, 39면.
46)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앞의 책, 12면.
47) 김일성, 「최고사령관 명령 제7호: 부대칭호 수여에 관하여」(1950.7.5), 전선사령부, 앞의 책(b), 39면.

근위칭호는 이로부터 15일 뒤인 7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전쟁에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인민군 륙·해·공군부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근위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위칭호는 “전쟁에서 공격작전에 주도적이며, 용감하고 결정적 행동으로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중요한 도시와 농촌을 해방시키며, 적의 군사시설·교통로를 점거함으로써 전선군대에 전반적 성과를 보장함에 있어서 특별한 공훈을 세운 연합부대·부대·함선함대·항공부대”에 수여했다. 이 칭호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제의에 따라 수여되었다.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의 군인들은 특별대우를 받았다. 근위부대의 모든 군인들은 민족보위상이나 연합부대장·부대장으로부터 가슴에 패용하는 근위휴장을 받았으며, 전시에 다른 부대 군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다. 전사·하사관은 월 기본급료의 100%를 더 받았고 군관은 50%를 더 받았다. 추가 월급은 근위칭호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정령이 실시됨과 동시에 지급되었다. 또한 근위부대는 새로운 병력을 보충할 때도 특별히 우수한 인원들로 보충받았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위부대를 떠났던 군인들도 건강을 회복하면 반드시 자신이 근무하던 근위부대로 복귀했다. 부대에 수여된 근위칭호는 오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박탈할 수 있었다.[48]

근위부대에는 근위군기가 수여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8월 16일 「근위군기에 관한 규정」과 「근위군기의 규격 및 도해」를 승인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위부대의 부대원은 다른 모든 인민군대 성원들에게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근위군기는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지정하는 대표자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부대 전원 앞에서 수여했다. 또한 근위군기는 부대의 명칭이나 번호 변경에 관계없이 항상 근위부대에 보존하며, 전투 시에는 반드시 근위군기를 근위부대가 전투하는 지역에 두어야 했다. 만약 전투과정에서 근위군기를 상실하면 근위부대 지휘관은 군

48) 「정령: 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에게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7.19), 제825군부대 정치부, 앞의 책, 3-5면.

사재판에 회부되고 근위부대는 근위칭호를 박탈당하고 조직이 개편되었다. 근위군기 앞면의 상부와 하부에는 각각 '근위대'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라는 글자를 새겼으며, 뒷면에는 근위흉장을 수놓고 흉장 아래에 근위부대의 번호와 명칭을 새겼다.[4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26일 처음으로 근위칭호를 수여했다.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는 서울 제105탱크사단, 서울 제3사단, 서울 제18연대 등 3개 부대였다. 그 이유는 '공격작전에 용감성을 발휘하여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중요한 도시와 많은 농촌을 해방시키며, 적의 군사시설과 교통로를 점거함으로서 전선군대의 전반적인 성과를 보장'했기 때문이었다.[50] 7월 28일에는 비행사단 추격기연대에 근위칭호가 수여되었다. 추격기연대의 공훈은 '공중을 엄호하여 인민군 지상부대의 행군 및 도하작전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적의 전선 후방 예비대 및 수송로들을 폭격하여 적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공중전에서 용감성을 발휘함으로써 전선군대의 전반적 성과를 보장'했다는 것이었다.[51] 8월 17일에는 '절대 우세한 적 함선을 격멸함에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전선군대의 전반적 성과를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군함대 제2어뢰정대가 근위칭호를 받았다.[52]

6·25전쟁 기간 동안 근위칭호·지역칭호·인명칭호를 받은 부대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53]

---

49) 「정령: 조선인민군 근위군기의 제정에 관하여」(1950.8.16), 제825군부대 정치부, 앞의 책, 6-8면; 「근위군기에 관한 규정, 근위군기 규격 및 도해, 근위 흉장 도해」, 『로동신문』, 1950.8.18.
50) 「정령: 서울 제105땅크사단, 서울 제3사단 및 제18련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7.26), 전선사령부, 앞의 책(b), 49면.
51) 「정령: 비행사단 추격기련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7.28), 전선사령부, 앞의 책(b), 50면.
52) 「정령: 인민군 해군함대 제2어뢰정대에 근위칭호를 수여함에 관하여」(1950.8.17), 전선사령부, 앞의 책(b), 51면.
53)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c), 473면; 『조선인민군』, 1950.7.29; 『로동신문』, 1950.7.27; 8.6; 1951.1.20; 1.25; 2.6; 2.7; 2.10; 2.11; 3.1; 3.12; 3.24; 5.18; 7.26; 8.14.
54) 『조선인민군』, 1950.7.29.

〈표 3〉 근위칭호・지역칭호・인명칭호 수여부대 현황(1950-1953년)

수여일	수여 부대	근위부대 명칭
1950.7.5	제3보병사단, 제4보병사단, 제18보병련대, 제105땅크여단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4보병사단, 서울 제18보병련대, 서울 제105땅크사단
1950.7.26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18보병련대, 서울 제105땅크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제18보병련대, 근위 서울 제105땅크사단
1950.7.28	비행사단 추격기련대[54]	근위 제1추격기련대
1950.8.2	제12보병사단	안동 제12보병사단
1950.8.17	해군함대 제2어뢰정대	근위 제2어뢰정대
1950.8.19	서울 제4보병사단	근위 서울 제4보병사단
1950.8.29	제6보병사단	근위 제6보병사단
1951.1.22	제19고사포련대	근위 제19고사포련대
1951.1.27	근위 제2보병사단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1951.2.6	근위 서울 제4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1951.2.11	근위 서울 제105땅크사단	근위 서울 제105기계화사단
1951.8.9	제10보병련대	근위 제10보병련대
1952.2.5	제23고사포련대	근위 제23고사포련대
1952.3.12	제3고사포련대	근위 제3고사포련대
1953.2.7	제86련대	근위 제86보병련대

전쟁기간 동안 근위칭호・지역칭호・인명칭호를 받은 부대는 17개 부대이다. 이 가운데 칭호를 중복해서 받은 부대를 제외하면 근위칭호를 받은 부대는 12개 부대이고 지역칭호를 받은 부대는 서울 제3보병사단, 서울 제4보병사단, 서울 제18보병련대, 서울 제105땅크사단, 안동 제12보병사단 등 5개 부대이다. 인명칭호를 받은 부대는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등 2개 부대이다.

김책과 강건 등 지휘관의 인명이 처음 부대칭호로 수여된 시기는 1951년 1월 27일이다. 이날 근위 제2보병사단은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이라는 칭

호를 받았다. 강건은 개전 초기에 전선사령부 총참모장으로 북한군을 지휘하다가 1950년 9월 8일 경북 상주 인근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사망했다.[55] 그러자 북한정부는 9월 10일 강건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56] 강건에 이어 부대칭호에 인명이 부여된 지휘관은 김책이었다. 개전 초기부터 전선사령관이었던 김책은 1951년 1월 31일 평남 강동군 전선사령부 집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57] 북한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해 2월 4일 서울 근위 제4사단을 '김책 서울 근위 제4사단으로 개칭한다'라고 결정했다.[58]

제2보병사단은 그 전신인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의 초대 소장이 강건이었기 때문에 '강건' 칭호를 받았다. 제4보병사단은 제3보병사단과 함께 서울을 점령한 사단이었는데 1951년 당시 제3보병사단이 조·중연합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음에 비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김책' 칭호를 받은 것이다.[59] 휴전 때까지 부대칭호에 인명이 부여된 지휘관은 강건과 김책뿐이었다.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전선사령부 전선사령관과 총참모장으로 북한군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둘 다 일제시기에 김일성과 함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한 최측근이었기 때문이었다.

3) 훈장·메달의 확대와 수여

북한군의 표창제도 중 훈장·메달은 전쟁 발발 이후에 그 종류와 수훈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먼저 전쟁 전에 197명이었던 국기훈장 수훈자는 개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6·25전쟁이 진행된 3년 동안 국기훈장 제1급·제2급·제3급을 받은 사람은 총 78,030명에 달했다. 1948년 10월 12일

55) 간부과장 김만화, 「82번 동지 앞」(1950.9.8), 제13사단, 『신호일람표, 지형암호표 외』, 제13사단, 1950.
56)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244-245면.
57) 「고 김책 동지」, 『해방일보』, 1951.2.4.
58) 「내각결정 제201호」, 『해방일보』, 1951.2.4.
5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2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1-63면.

국기훈장 제정 당시 수여대상은 '특별한 공훈 있는 공민・집단・기관・기업소・사회단체'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기훈장은 전쟁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 정규군의 군관들에게 수여되었다. 그러나 개전 이후에는 수훈자가 다른 부문・기관・유격대와 하사관・전사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계공장 공작과 판성공 김영주는 개전 이후 전시에 필요한 부품의 생산량을 835% 늘인 공로로 1950년 8월 16일 국기훈장 3급을 받았다. 1951년 4월 12일에는 전시수송사업을 보장한 공로로 개천역 운전조역 강선득, 안주철도관리국 기관사 김명식 등 4명이 국기훈장 2급을 받았고 38명이 집단적으로 국기훈장 3급을 받았다. 게다가 유엔군의 후방지역에서 유격활동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유격대에 대한 국기훈장 수여도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남한지역 유격대 지휘관 리현상과 윤상칠은 1951년 1월 26일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60] 전쟁기간 동안 수여된 국기훈장을 각 급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1]

〈표 4〉 국기훈장 수여 현황(1950-1953년)

급수	수훈자・수훈부대(비율)	계
1급	북한군 1,344명(91%), 중국군 133명(9%), 『조선인민군』(신문), 안동 제12보병사단	1,477명(100%)
2급	북한군 1,651명(65.6%), 중국군 866명(34.4%)	2,517명(100%)
3급	북한군 51,527명(69.6%), 중국군 22,509명(30.4%)	74,036명(100%)
합계	북한군 54,522명(69.9%), 중국군 23,508명(30.1%)	78,030명(100%)

국기훈장을 받은 북한군은 54,522명(69.9%)이었고 중국군은 23,508명(30.1%)이었다. 북한군이 전체 수훈자의 70%를 차지한 것은 자연스럽지만 중국군도 전체 수훈자의 30.1%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이 국기훈장을 받았

60) 「영예의 국기훈장에 빛나는 산업일꾼들」, 『로동신문』, 1950.8.20; 「정령: 교통부문일꾼들에게 국기훈장 제2급 제3급 및 공로메달을 수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4.19; 「정령: 인민유격대 대장 리현상・윤상칠 동지들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1.26.
61)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c), 473-474면.

다. 대표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중국군 참전 1주년 전날인 1951년 10월 18일 중국군의 공훈을 기려 중국군 총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에게 평양에서 직접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62] 하지만 급수별로 보면 제1급 수훈자는 북한군이 9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중국군은 제1급에 비해 주로 제2급・제3급을 받았다. 또한 국기훈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과 부대에도 수여되었다. 즉 기관 중에는 북한군 기관지 『조선인민군』이, 부대 중에는 안동 제12보병사단이 각각 유일하게 국기훈장 제1급을 받았다.

6・25전쟁이 시작되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유독립훈장과 별도로 1950년 7월 1일 '전사의 영예훈장'을 새로 제정했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전쟁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전사・하사관・3급군관・유격대원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제1급과 제2급으로 구분되었다.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수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은 자유독립훈장과 달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사단장・여단장・유격대장이 수여할 수 있었다.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제2급 수훈자는 국기훈장 제2급・제3급에 규정된 특전을 받았다. 국기훈장 대비 급수를 보면 전사의 영예훈장은 자유독립훈장보다 한 급 아래였다. 그러나 특전은 상당했는데 전사와 하사관은 각각 하사관과 3급군관으로 승급하고,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 5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63]

국기훈장과 전사의 영예훈장의 차이점은 수여대상자였다. 국기훈장은 전사・하사관・군관・장관이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전사의 영예훈장은 3급군관 이하만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전사・하사관・하급군관에게 주는 훈장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전투에서 이들의 전투의지와 전과를 고취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전사의 영예훈장은 국기훈장과 달리 「정령」에 수여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64]

---

62) 홍학지(洪學智) 지음, 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297면.
63) 「정령: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1950.7.1), 전선사령부, 앞의 책(a), 34-38면.
64) 「정령: 전사의 영예훈장 제정에 관하여」(1950.7.1), 전선사령부, 앞의 책(a), 35-37면.

〈표 5〉 전사의 영예훈장 수여대상자

군종	수여대상자
육군 · 해군	· 적의 배치지에 제1착으로 돌입하여 자기의 용감성을 발휘함으로써 전반적 전투의 성과를 보장한 자 · 불타는 전차속에서 자기의 전투임무를 계속 수행한자 · 부대기를 탈취당할 위급한 순간에 이를 고수한 자 · 자기의 무기로써 적의 병사 및 군관 10 내지 15명을 소멸한 자 · 반전차포로써 적의 전차 2대 이상을 격파한 자 · 전장 또는 적의 후방에서 수류탄으로써 적의 전차 1 내지 3대를 격파한 자 · 포 또는 기관총으로써 적의 비행기 3대 이상을 격추한 자 ·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토목화점(영구화점, 전호 또는 음폐호)에 제1착으로 돌입하여 결정적 활동으로써 적의 수비대를 소멸한 자 · 자기의 정찰결과로써 적의 약한 방어지점을 확정하고 우리부대를 적의 후방에 인도한 자 · 야간에 적의 복초(순찰병, 잠복초)를 소멸 또는 포로한 자 · 자기의 인내성과 용감성으로써 적의 진지에 돌입하여 적의 기관총 또는 박격포를 격파한 자 · 야간 출격으로써 적의 군수품창고를 소멸한 자 · 전투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위험에 처한 지휘관을 구출한 자 · 전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군기를 탈취한 자 · 자기의 무기로써 적의 비행기를 격추한 자, 포 또는 박격포로써 적의 화력기재를 소멸하고 자기 구분대의 전투성과를 보장한 자 · 공격하는 구분대를 위하여 적의 화력밑에서 적의 철조망을 끊고 통로를 개설한 자 · 루차의 전투에서 적 화력하에 생명을 무릅쓰고 부상자를 구원한 자 · 적의 종대에 자기전차로 돌입하여 적의 종대를 궤멸시키고 전투임무를 계속 수행한 자 · 자기전차로써 적의 포 1문 내지 수문을 격파하였거나 기관총호 2개 이상을 소멸한 자 · 정찰로써 주요한 적정을 수집한 자
공군	· 공중전에서 적의 추격기 2대 내지 4대, 또는 적의 폭격기 3대 내지 6대를 격추한 추격비행사 · 습격에서 적의 전차 2대 내지 4대 또는 적의 기관차 3대 내지 6대를 소멸하였거나, 군용렬차를 격파하였거나, 적의 비행장에서 적 비행기 2대 이상을 격파한 습격비행사 · 공중전에서 용감한 창발적 행동으로써 적 비행기 1대 내지 2대를 격추한 습격비행사 · 교량 · 탄약고 · 연유땅크를 격파하거나, 련합부대 참모부를 소멸하였거나, 철도제방을 폭파하였거나, 군함 · 수송선 · 함정을 침몰시켰거나, 적 비행장에서 적기 2대 이상을 격파한 폭

군종	수여대상자
	격비행승무원 · 탄약고 · 연유땅크를 폭파하였거나, 적 참모부를 소멸하였거나, 군용렬차 또는 교량을 폭파한 야간폭격기승무원 · 탄약고 · 연유땅크 · 수송선 · 군용렬차를 폭파한 야간 장거리 폭격기승무원 · 공중전에서 용감한 행동으로써 적비행기 1대 내지 2대를 격추한 주간폭격기승무원 · 중요한 적정을 수집한 정찰승무원

전사의 영예훈장 수여대상자 중 육군・해군은 적군을 사살하고 포로로 잡거나 적의 화점・진지를 점령하고 기관총・박격포・포・전차・비행기를 격파하는 등 공격적 전과를 기록한 군인이었다. 또한 부대기를 지키거나 지휘관・부상자를 구출하는 등 방어적 전과와 정찰임무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에게도 수여되었다. 공군의 수여대상자는 공중전에서 적의 전투기・폭격기를 격추하거나 지상지원작전에서 전차・기관차・군용열차・비행장・교량・탄약고・연유탱크・함선 등을 격파한 비행사와 승무원들이었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전과의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육군의 경우 10-15명 사살, 포 1문 이상 격파, 전차 2대 이상 격파, 비행기 3대 이상 격추 등으로 인명과 무기에 두루 규정되었다. 이와 달리 공군은 비행기 1-6대 격추, 전차 2-4대 소멸, 기관차 3-6대 소멸 등 무기・장비의 소멸에 맞추어졌다. 북한이 이 훈장의 전과 기준을 정한 것은 현지에서 사단장・여단장・유격대장이 수훈자를 선정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무분별한 표창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영웅칭호나 국기훈장보다 세부적인 전과 기준을 통해 마치 인민경제계획의 목표처럼 전사들이 전투과정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사의 영예훈장과 별도로 1950년 7월 7일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을 새로 제정했다. 자유독립훈장은 “자기 부대의 성공적 전과를 보장한 인민군 지휘관들과 유격대의 연합부대 및 부대의 지도자들”에게 수여되었다. 이 훈장의 수여와 박탈은 오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만 할 수 있었다. 자유독립훈장 제1급은 사단장・여단장・유격대

연합부대장에게 수여되었고 제2급은 연대장·대대장·중대장·유격대부대장들에게 수여되었다. 제1급·제2급 수훈자는 국기훈장 제1급·제2급에 규정된 특전을 받았다.[65]

국기훈장의 수여대상자는 전사·하사관·군관·장관 등 모든 군인이었던 반면 자유독립훈장의 수여대상자는 '인민군과 유격대'의 지휘관으로 한정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북한이 국기훈장과 별도로 자유독립훈장을 새로 제정한 이유와 직결되어 있다. 북한은 지휘관용 훈장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서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휘관들의 전투의지와 적극성을 독려하려고 구상한 것이다.

자유독립훈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부대에도 수여되었다. 안주철도관리국 개천역은 전시수송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공훈으로 1951년 4월 12일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받았다.[66] 제82연대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4월까지 해주점령전투, 서울 수리산방어전투, 일월봉 방어전투에서 2,460명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은 공로로 1951년 5월 9일에 자유독립훈장 제2급과 최고사령관의 축하문을 받았다.[67]

자유독립훈장이 제정된 지 6일 뒤인 7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리순신훈장"을 제정했다. 이 훈장은 "해상작전을 계획진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장한 해군 군관들"에게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훈장은 전사의 영예훈장과 마찬가지로 제1급·제2급으로 구분되었고, 제1급·제2급 수훈자는 국기훈장 제1급·제2급에 규정된 특전을 받았다.[68]

역사인물인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전쟁 전에 이미 북한 해군에서 사용된 바 있다. 북한정부는 1950년 5월 5일 당시 새로운 경비정을 건조 중이었는데 민족보위성은 이 경비정에 "리순신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리순신호는 5

65) 「정령: 자유독립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7.7), 전선사령부, 앞의 책(a), 39-42면.
66) 「안주철도관리국 개천역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수여함에 관하여」, 『로동신문』, 1951.4.19.
67) 「자유독립훈장 제2급과 최고사령관의 축하문받은 제82련대의 빛나는 전투업적」, 『로동신문』, 1951.5.19.
68) 「정령: 리순신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7.13), 전선사령부, 앞의 책(a), 43-48면.

월 7일에 무선시설이 설치된 뒤에 해군 원산기지 제4정대에 보조선박으로 배치되었다.[69] 이처럼 이순신은 북한군에서 해군을 상징하는 역사인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해군 지휘관들에게 수여되는 훈장도 리순신훈장으로 명명된 것이다.

육군·공군에게 수여되는 전사의 영예훈장과 해군에게 수여되는 리순신훈장의 차이점은 수여대상자였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전사·하사관·3급군관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리순신훈장은 해군 군관만 받을 수 있었다. 북한이 해군 군관들을 위해 7월 13일에 특별히 리순신훈장을 제정한 이유는 개전 직후 해군의 전투상황과 관련되어 있었다. 개전 당시 북한 해군은 중앙기지인 원산기지에 16척의 정규함정과 6척의 보조선박을, 남포기지에 5척의 정규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70] 물론 이외에도 수십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선박들은 민간에서 징발한 발동선이었다.

그러나 해군의 핵심전력이었던 원산기지 정규함정 중 5척은 7월 2일 주문진해전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되었다. 7월 2일 이후에도 원산기지는 11척의 정규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척은 고장이 발생해서 수리에 들어갔고 9척은 8월 말까지도 출전하지 못한 채 계속 원산항 인근에 정박 중이었다.[71] 북한 해군이 함정을 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미 해군이 7월 4일부터 한반도 해역에 대한 대규모 해상봉쇄작전을 개시하면서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72] 북한은 미 해군에 의해 해상이 봉쇄되자 해군부대의 해상 공격·방어와 대상륙작전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히 리순신훈장을 제정한 것이다. 이 훈장의 수여대상이 '해상작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군관으로 특정된 점은 이를 증명한다.

리순신훈장 또한 전사의 영예훈장과 동일하게 「정령」에 수여대상자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리순신훈장의 수여대상자는 해전·상륙작전·대상륙

69) 작전직일관, 「1950년 5월 5·7일, 7월 17일 보고서」, 『아침보고서』, 원산기지, 1950.9.28.
70) 김선호, 「6·25전쟁 직전 북한 해군의 실태 연구」, 『동방학지』208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2924, 251면.
71) 작전직일관, 「1950년 7월 2일-8월 31일 보고서」, 앞의 자료.
72)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상권, 해군본부, 2020, 253면.

작전・방어전 및 육군과의 합동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군관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적의 해군력・해안기지・요새를 소멸하거나 군함・수송선을 격침한 경우, 상륙작전・대상륙작전을 완수하거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의 격멸한 경우, 해상에서 육군에 대한 지원작전・합동작전을 완수하거나 아군의 교통요점・기지・해안을 방어한 경우 등이었다.[73]

하지만 6・25전쟁기간 동안 리순신훈장 제1급을 받은 군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리순신훈장 제2급은 22명이 받았다.[74] 이처럼 리순신훈장 수훈자가 다른 훈장의 수훈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 1950년 7월 4일 이후 미 해군의 해상봉쇄작전으로 인해 북한 해군의 해상전투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보다 많은 모범적 군인을 창출하기 위해 직무와 공훈에 따라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한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대거 위임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6일, 7월 28일, 9월 2일 세 번에 걸쳐 훈장과 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전선 군사위원회, 사단장, 여단장, 유격대 연합부대장, 민족보위상, 해군사령관에게 부여했다.[75] 아직까지 위임된 훈장의 종류와 수여대상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뒤이어 1951년 1월 22일에는 훈장・메달의 표창권한을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에게 부여했다. 군단장들이 수여할 수 있는 훈장・메달은 국기훈장 제3급, 자유독립훈장 제2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제2급, 군공메달이었다. 다만 수훈자는 전사・하사관과 대대장 이하 군관으로 한정되었다.[76] 북한이 국기훈장의 표창권한을 군단장들에게 부여한 것은 다수의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 전과가 종합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각 지역별 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군인들을 즉시 표창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1년 3월 27일과 4월 17일 정령을 통

73) 「정령: 리순신훈장 제1급・제2급의 제정에 관하여」(1950.7.13), 전선사령부, 앞의 책(a), 43-48면.
74)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c), 473면.
7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의 책, 398면.
7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의 책, 394-395면.

해 군공메달의 표창권한을 각각 내무상과 사회안전상에게 부여했다. 내무상은 내무서원부터 내무서장까지, 사회안전상은 사회안전성의 시·군·구역 부원부터 부장급까지 군공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정령에 따라 전쟁 전에 인민군과 국경경비대에만 수여되던 군공메달은 국내의 치안과 사회의 정치적 통제를 담당하는 내무성·사회안전성 소속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52년 3월 10일에는 전시철도운송을 책임진 철도상에게도 철도종업원 7급까지 군공메달과 공로메달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77]

6·25전쟁 시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표창권한을 위임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8]

〈표 6〉 6·25전쟁 시기 표창권한 위임 현황(1950-1953년)

결정시기	위임받은 자	수여대상자	위임된 표창 종류
1950.7.6, 7.28, 9.2	전선 군사위원회, 사단장, 여단장, 유격대 연합부대장, 민족보위상, 해군사령관	인민군 전사·하사관·군관	모름
1951.1.22	군단장	인민군 전사·하사관, 대대장 이하 군관	· 국기훈장 3급 · 자유독립훈장 2급 · 전사의 영예훈장 1·2급 · 군공메달
1951.3.27	내무상	내무서원-내무서장	· 군공메달
1951.4.17	사회안전상	시·군·구역 부원-부장급	· 군공메달
1951.10.15	최고사령관	인민군 전체 전사·하사관·군관	· 국기훈장 1·2급 · 자유독립훈장 2급 · 리순신훈장 2급 · 전사의 영예훈장 1·2급 · 군공메달
	전선사령관	인민군 전사·하사관,	· 국기훈장 3급

7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의 책, 396-398면, 401-402면.
7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의 책, 394-404면.

결정시기	위임받은 자	수여대상자	위임된 표창 종류
		1-7급 군관	· 전사의 영예훈장 2급 · 군공메달
	군단장, 해군사령관, 포병사령관, 항공사령관, 장갑땅크사령관, 후방총국장	인민군 전사·하사관, 1-7급 군관	· 전사의 영예훈장 2급 · 군공메달
1952.3.10	철도상	철도종업원 7급까지	· 군공메달 · 공로메달
1953.8.31	민족보위상	인민군 전사·하사관·군관 (대좌까지)	· 국기훈장 2·3급 · 자유독립훈장 2급 · 전사의 영예훈장 1·2급 · 군공메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9월에 세 번에 걸쳐 표창권한을 위임했고 1951년 1-4월에 세 번에 걸쳐 표창권한을 위임했다. 1950년 7-9월은 북한군이 남한 전체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던 시기이고 1951년 1-4월은 공산군이 3차·4차 공세로 서울을 재점령하고 38선 이남에서 유엔군의 반격을 저지하던 시기였다. 즉 이 시기는 6·25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이처럼 결정적 시기에 표창권한을 최전선과 제2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함으로써 모범군인의 창출을 통해 승리를 굳히려고 계획한 것이다.

또한 1951년 10월 15일에는 앞서 위임했던 표창권한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표창권한은 1950년 7월 6·28일, 9월 2일, 1951년 1월 22일에 전선 군사위원회,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유격대 연합부대장, 민족보위상, 해군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이었다. 10월 15일 정령을 통해 최고사령관·전선사령관·포병사령관·항공사령관·장갑땅크사령관·후방총국장에게 훈장·메달을 수여할 권한이 새로 부여되었고 훈장·메달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국기훈장 제1·2급, 자유독립훈장 2급, 리순신훈장 2급, 전사의 영예훈장 1급은 오직 최고사령관만 수여할 수 있었고, 국기훈장 3급은 전선사령관만 수여할 수 있었다.

반면에 군단장·사단장·여단장·유격대연합부대장에게 부여되었던 표창권한은 축소되었다. 군단장의 경우 1951년 1월 22일에 국기훈장 3급, 자유독립훈장 2급, 전사의 영예훈장 1·2급, 군공메달을 수여할 권한이 부여되었는데 10월 15일에는 표창권한이 전사의 영예훈장 2급과 군공메달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조치는 표창권한을 최고사령관부터 군단장까지 직무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군단장·사단장·여단장·유격대연합부대장 등 전선의 지휘관이 검증된 전과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표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는 훈장·메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기존에 있던 국기훈장·군공메달을 계속 수여하는 한편 영웅칭호, 자유독립훈장, 전사의 영예훈장, 리순신훈장 등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표창의 종류와 수여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영웅칭호와 훈장·메달의 수훈자는 1,169,398명에 달했다.[79]

〈표 7〉 6·25전쟁 시기 영웅칭호·훈장·메달 수여 현황(1950-1953년)

수여일	제정일	수여대상	급수	수훈자·수훈부대	계
영웅칭호	1950. 6.30	전사-장관	없음	북한 481명, 중국군 10명	491명
국기훈장	1948. 10.12	전사-장관	1급	북한 1,344명, 중국군 133명, 『조선인민군』(신문), 안동 제12사단	1,477명
			2급	북한 1,651명, 중국군 866명	2,517명
			3급	북한 51,527명, 중국군 22,509명	74,036명
자유독립훈장	1950. 7.7	정규군·유격대 지휘관	1급	북한 95명, 중국군 126명	221명
			1급	제1공병련대, 강건군관학교, 김책정치군관학교, 제82보병련대, 제15보병사단, 제27보병사단, 제89보병련대, 제1통신련대, 제47사 고사포대대, 제5군단 직속 공병대대, 제1운수대대, 제2운수대대	12개 부대·학교

수여일	제정일	수여대상	급수	수훈자・수훈부대	계
			2급	북한 3,043명, 중국군 4,703명	7,746명
전사의 영예훈장	1950. 7.1	전사・하사관・3급군관・유격대원	1급	북한 7,972명, 중국군 530명	8,502명
			2급	북한 112,170명, 중국군 6,349명	118,519명
리순신 훈장	1950. 7.13	해군 군관	1급	없음	0명
			2급	북한 22명	22명
군공메달	1949. 6.13	전사-장관	없음	북한 540,407명, 중국군 415,460명	955,867명
합계				북한 718,712명, 중국군 450,686명	1,169,398명

총 1,169,398명의 수훈자를 표창 종류별로 보면 영웅칭호 수훈자는 491명이었고 국기훈장 수훈자는 78,030명(6.6%)이었다. 자유독립훈장 수훈자는 7,967명(0.7%)이었고 전사의 영예훈장 수훈자는 127,021명(10.9%)이었으며 군공메달 수훈자는 955,867명(81.7%)이었다.

전체 수훈자 1,169,398명 중 군공메달 수훈자는 955,867명으로 81.7%를 차지했다. 군공메달은 전사부터 장관까지 모든 직무의 군인이 받을 수 있었고 특전도 전차의 무임승차뿐이었기 때문에 전투의지를 북돋기 위해 가장 많이 수여된 것이다. 군공메달 다음으로 많이 수여된 훈장은 전체의 10.9%인 127,021명이 받은 전사의 영예훈장이었다. 전사의 영예훈장은 장관과 4급 이상 군관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었고 정규군뿐만 아니라 유격대원들도 수여대상자였기 때문에 다른 훈장보다 수훈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훈장은 제2급 수훈자가 제1・2급 수훈자 118,519명 중 93.3%를 차지해서 대부분 제2급이 수여되었다.

국기훈장 수훈자는 전체의 6.6%인 78,030명에 달했다. 전사의 영예훈장보다는 수훈자가 적었지만 영웅칭호를 제외하고 최고훈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수훈자가 많았다. 국기훈장 역시 제1・2・3급 수훈자 중 94.9%가 제3급을

79)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c), 473-474면.

받았다.[80] 반면에 자유독립훈장 수훈자는 7,967명으로 전체 수훈자 0.7%에 불과했다. 이는 수여대상이 내무군과 전사・하사관을 제외하고 인민군・유격대의 지휘관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적게 수여된 훈장은 리순신훈장이다. 리순신훈장은 제1급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제2급을 받은 사람도 22명뿐이었다. 그 이유는 앞서 확인했듯 1950년 7월 4일 미 해군의 해상봉쇄작전 이후 북한 해군이 해상작전을 거의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화국 영웅칭호'는 전쟁기간 동안 총 491명이 받았다. 그런데 1950년 7-12월까지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은 40명에 불과했다. 특히 9월 7일 전선사령부 공병국장 박길남이 영웅칭호를 받은 이후 12월 31일까지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9-12월에 북한군이 북・중 국경까지 후퇴해서 재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후 영웅칭호 수훈자는 1951년에 대폭 증가했다. 1951년 수훈자는 전체의 54.8%에 해당하는 269명이었다. 특히 1951년 2-5월에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 148명으로 전체 수훈자의 30%에 달했다.[81] 반면에 1952-1953년 수훈자는 전체 영웅칭호 수훈자의 37.1%인 182명에 불과했다. 이는 1951년 2-5월에 진행된 공산군의 4차・5차 공세시기에 영웅칭호가 가장 많이 수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확인했듯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1년 1월 22일 국기훈장 제3급, 자유독립훈장 제2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2급, 군공메달의 수여권한을 '조선인민군 군단장들'에게 부여했다. 전체 수훈자 1,169,398명 중에 이 5개 훈장・메달을 받은 사람은 1,164,670명(99.6%)에 달했다. 그러므로 6・25전쟁 시기에 표창을 받은 사람 중 99.6%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전선에서 군단장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받았던 것이다.

이와 달리 영웅칭호, 국기훈장 제1급・제2급, 자유독립훈장 제1급 수훈자 4,706명(0.4%)은 모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직접 훈장을 수여받

80) 국기훈장 수훈자는 군 내부의 승진을 넘어 사회로 진출할 때 제대군인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된 것 같다. 리우섭은 군 생활에서 두 번의 군공메달과 국기훈장 제3급을 받았는데 제대 이후 직장의 간부급인 검사원으로 배치되었다. 서홍석, 「1950년대 전반기 북한 '영예군인'의 활동과 사회주의 이행의 결합」, 『동국사학』81호,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4, 402면.

81) 조선중앙통신사 편, 앞의 책(b), 442-445면.

았다. 따라서 영웅칭호와 3개 훈장은 북한군이 받을 수 있는 상위급 훈장이었다.

한편 전체 수훈자의 38.5%에 해당하는 450,686명의 중국군도 북한으로부터 영웅칭호와 각종 훈장·메달을 수여받았다. 중국군이 받은 훈장·메달을 수훈자 인원 순서로 정리하면 군공메달 415,460명, 국기훈장 제3급 22,509명,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 6,349명, 자유독립훈장 제2급 4,703명 등이다. 이 훈장·메달은 모두 전선사령관, 해군사령관·포병사령관 등 군종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들이 수여할 수 있는 표창이었다. 반면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수여하는 영웅칭호, 국기훈장 제1·2급, 자유독립훈장 제1급을 받은 중국군은 1,135명으로 중국군 전체 수훈자의 0.25%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국군 수훈자의 99.75%는 전선사령관을 비롯해 전선의 북한군 지휘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던 것이다.

6·25전쟁 시기 표창제도의 특징을 보면 북한은 영웅칭호, 자유독립훈장, 전사의 영예훈장, 리순신훈장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전쟁 이전에 주로 군인들에게 수여한 국기훈장을 다른 부문과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3급 군관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전사의 영예훈장과 해군 군관만 받을 수 있는 리순신훈장의 전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전사·하사관과 해군 군관들이 전투과정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점령의 승패를 좌우하던 1950-1951년에 2중 영웅을 다수 배출했고 6회에 걸쳐 표창권한을 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했다. 이는 북한이 영웅과 모범군인을 전쟁상황에 맞춰 의도적으로 배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표창의 종류·수훈자·영역을 각 계급·부문·기관·전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련·중국처럼 표창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의 승리를 추구했다.

4. 맺음말

북한은 1947년 4월에 '표창장'을 제정한 이후 1948년 10월 12일에 처음으로 최고훈장인 국기훈장을 제정하고 1949년 6월 13일에 군공메달을 도입했다.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6·25전쟁 초기에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6월 30일 영웅칭호를 새로 제정했고 7월 1일, 7월 7일, 7월 13일에 각각 전사의 영예훈장, 자유독립훈장, 리순신훈장을 새로 도입했다. 전쟁 전에 도입했던 국기훈장과 군공메달의 수훈자도 광범위한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북한은 6·25전쟁이 진행된 3년의 기간 동안 북한인 718,712명과 중국군 450,686명 등 총 1,169,39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가장 많이 수여된 표창은 전체 수훈자의 81.7%인 955,867명이 받은 군공메달이었고 그 다음은 127,021명(10.9%)이 받은 전사의 영예훈장이었다. 북한군의 경우 군인의 절반 이상이 군공메달이나 전사의 영예훈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 초기에 공훈자에 대한 포상의 성격에서 시작된 표창제도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표창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 대한 압박의 기제로 변화해 그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특히 전체 '공화국 영웅' 중 30%는 공산군의 4차·5차 공세시기인 1951년 2-5월에 배출되었으며, 표창권한은 개전 초기인 1950년 7-9월과 3차·4차 공세시기인 1951년 1-4월에 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되었다. 북한은 표창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투현장에서 모범군인의 창출을 통해 승리를 굳히려고 구상했다.

6·25전쟁 시기 표창제도의 특징을 보면 북한은 영웅칭호, 자유독립훈장, 전사의 영예훈장, 리순신훈장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전쟁 이전에 주로 군인들에게 수여한 국기훈장을 다른 부문과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리고 3급 군관 이하만 받을 수 있는 전사의 영예훈장과 해군 군관만 받을 수 있는 리순신훈장의 전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전사·하사관과 해군 군관들이 전투과정에서 달성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한반도 점령의 승패를 좌우하던 1950-1951년에 2중 영웅을 다수 배출했고 6회에 걸

쳐 표창권한을 전선의 지휘관들에게 대폭 위임했다. 이는 북한이 영웅과 모범군인을 전쟁상황에 맞춰 의도적으로 배출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한은 6·25전쟁 시기에 표창의 종류·수훈자·영역을 각 계급·부문·기관·전선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련·중국처럼 표창제도를 대중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국가 건설과 전쟁 승리를 추구했다. 북한군의 표창은 군인들에게 군대 안에서 정치적·군사적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고향·가족과 제대 후 본인에게 사회적·경제적 보상을 주었다는 점에서 군대와 사회를 긴밀히 결속시켰다. 따라서 북한군의 표창제도는 영웅 등 군사적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국가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6·25전쟁 전후에 군사적 요소가 북한사회에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 참고문헌

『로동신문』, 『朝鮮新聞』, 『조선인민군』, 『해방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7권,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
류문화, 『해방후 4년간의 국내외 중요일지』(증보판), 민주조선사, 1949.
문화선전성, 『조선인민군 창립 二주년에 제하여』, 문화선전성, 1950.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紀律規程』,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
작전직일관, 『아침보고서』, 원산기지, 1950.9.28.
전선사령부, 『문헌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
전선사령부, 『문헌집』제3집,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 1950.8.
제17포병연대, 『민족보위성 리력서(강병찬・김세찬・리관호・신영일・정영삼)』, 민족보위성, 1949・1950.
제582군부대, 『하사관・병사 리력서』, 제582군부대, 1949.8.
제825군부대 정치부, 『근위칭호에 관한 재료집』, 제825군부대, 1950.
조선인민군, 『전투영웅실기』, 조선인민군, 1950.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1950년・1951-1952년・1954-1955년)』, 조선중앙통신사, 1950・1952・1955.

김선호, 『조선인민군 :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출판부, 2020.
김일성, 『김일성전집』 8・1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1995.
안룡선, 『위대한 수령님과 전사 강건』, 금성청년출판사, 1998.
임성채, 『6・25전쟁과 한・미 해군작전』상권, 해군본부, 202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홍학지(洪學智) 지음, 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김선호, 「6・25전쟁 직전 북한 해군의 실태 연구」, 『동방학지』 208,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4.
서홍석, 「1950년대 전반기 북한 '영예군인'의 활동과 사회주의 이행의 결합」, 『동국사학』 81, 동국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4.
송현진, 『북한의 영웅정치 연구』,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Abstract】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Army's Commendation System

Kim, Seon-ho*

Since establishing the 'Commendation Medal' in April 1947, North Korea introduced and continuously expanded the commendation system in the North Korean Army until the Korean War. On October 12, 1948, the National Flag Medal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nd on June 13, 1949, the Military Merit Medal was introduced. The North Korean Army's commendation system developed rapidly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On June 30, 1950,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established a new title of Hero, and on July 1-13, the Honor Medal of Honor, the Order of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the Order of Yi Sun-sin were newly introduced. The number of recipients of the National Flag Medal and the Military Merit Medal, which had been introduced before the war, also increased rapidly immediately after the war.

North Korea awarded commendations to 1,169,398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including 718,712 North Koreans and 450,686 Chinese. The most common commendation was the Military Merit Medal, which was awarded to 81.7% of all recipients, followed by the Medal of Honor, which was awarded to 10.9%. The highest honor, the Order of the National Flag, was awarded to 6.6%, and the highest honor, the title of Hero, was awarded to 481 North Koreans and 10 Chinese. Compared to the North Koreans, the Chinese received most of their medals and decorations from North Korean commanders at the front.

In additio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legated the commendation authority to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division commanders, and guerrilla unit commanders six times between 1950 and 1951. In particular, North Korea planned to solidify its victory by creating model soldiers by largely delegating the commendation authority to frontline commanders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 Army was determining the outcome of the war.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North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Korea began to establish a peacetime system by centralizing all commendation authority that had been delegated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August 31, 1953.

Keywords: Title of Hero of the Republic, National Flag Medal, Guard Unit, Freedom Independence Medal, Military Merit Medal,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Korean War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20.